

행정기관명

수신

(경유)

제목 지방세 범칙사건조사(세무조사) 결과 통지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귀하(귀사)에 대한 범칙사건조사(세무조사)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납세자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			
	상호 (법인인 경우 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					
	주소(영업소)								
조사유형		당초 조사기간	~	실제 조사기간	~				
대상기간	~		대상세목						
결정 또는 경정 내용 및 사유									
세목	연도	과세대상	과세표준		산출세액		가산세액	예상 세액 합계	사유
			신고(당초)	결정(경정)	신고(당초)	결정(경정)			
산출근거									
기타사항									
붙임서류									

※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.

※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(범칙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는 제외)를 청구할 수 있으며,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(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5호 서식)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·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